맥쿼리 차이나 Bull 1.5 배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효력발생예정일: 2021 년 05 월 08 일

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   1)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 (2021 년 05 월 10 일 시행)
   2) 기업공시서식 개정 (2021 년 05 월 07 일 시행) 반영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	-	**(신설)** **13.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.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,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적용됩니다.)**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	가.~ 마. (생략)	가.~ 마. (현행과 같음) **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함 (법 시행령 제 2 조제 7 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,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,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**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주 1) (생략)	**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)** 주 1) (현행과 같음) **주 2)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적용됩니다.**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업데이트	-	**연혁 업데이트** **2021.05.08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** **(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적용됨)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(2021 년 05 월 07 일 시행) 반영**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: 투자신탁, 증권(주식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,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: 투자신탁, 증권(주식파생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, **고난도금융투자상품** **주)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적용됩니다.**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	-	**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.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,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 **주)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적용됩니다.**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1.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	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	-	**이 집합투자기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은 숙려기간 등의 권리를 보유 및 행사할 수 있습니다.** **① 녹취・숙려제도** **- 판매회사는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며,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** **-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(이하 "청약등"이라 합니다)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(이하 "숙려기간"이라 합니다)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.** **-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등을 한 투자자에게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. 투자자는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** **- 판매회사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,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,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,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** **-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여야만 청약등이 집행됩니다.**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-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 **주)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적용됩니다.**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   1)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 (2021 년 05 월 10 일 시행)
   2) 기업공시서식 개정 (2021 년 05 월 07 일 시행) 반영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표지(핵심위험)	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	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.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,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, 파생상품 투자위험, 환율변동 위험, 환헤지위험, 인덱스 투자위험, 레버리지 위험, 누적수익률과 괴리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. **이 집합투자기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,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% 이상을 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,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, 파생상품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투자위험, 환율변동 위험, 환헤지위험, 인덱스 투자위험, 레버리지 위험, 누적수익률과 괴리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주)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적용됩니다.**
요약정보 -분류	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	투자신탁, 증권(주식파생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,	투자신탁, 증권(주식파생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, **고난도금융투자상품** **주 1) 이 집합투자기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) 시행령 제 2 조제 7 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,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,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투자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숙려기간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.** **주 2)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적용됩니다.**
요약정보 - 투자비용	기업공시서식 개정(2021.05.07 시행) 반영	-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에 **총보수·비용 추가**
요약정보 -주요투자위험	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	-	**고난도금융투자상품 위험** **-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시행령 제 2 조제 7 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**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,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**주)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적용됩니다.**

집합투자규약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 (2021 년 05 월 10 일 시행)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2 조(용어의 정의)	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~ 8. (생략)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~ 8. (현행과 같음) **9.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.**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	펀드명 변경	① (생략)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투자신탁 2. 증권형(주식-파생형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종류형 6. 모자형	① (현행과 같음)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투자신탁 2. 증권형(주식-파생형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종류형 6. 모자형 **7. 고난도금융투자상품**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③~ ⑤ (생략)	③~⑤ (현행과 같음)
부칙	부칙 업데이트	-	<부 칙 [12] > **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 년 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.**